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63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임오경 · 박수현 · 안호영
박 정 · 박홍배 · 윤준병
박홍근 · 조계원 · 김교홍
한병도 · 진성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8월 4일 온라인자료 납본제도가 시행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온라인제도를 납본받고 있음.

그러나 2026년부터 웹툰, 웹소설을 대상으로 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되지 않을 예정이고,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제표준자료번호 온라인자료 뿐만 아니라,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 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웹툰, 웹소설),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본 협조 의무화 및 납본제외 근거를 명확화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확

보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도서관자료”로, “납본하여야 한다”를 “납본하여야 하고,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온라인자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3.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위논문으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된 자료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

제21조제2항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

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u>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 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u>납본하여야 한다.</u>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신설>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 <u>도서관자료</u> ----- ----- ----- ----- ----- ----- ----- ----- ----- ----- <u>납본하여야 하고,</u> <u>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단 삭제> 다만, 온라인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u>
<신설>	1.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 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신설>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신설>	3.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위논문으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된 자료
<신설>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 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 ④ (생 략) <u><신 설></u>	<u>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 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 를 부여받은 자료</u> ② ----- ----- 공공기 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 다)----- ----- ----- -----. ③ <u>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국가기 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u>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u>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 앙도서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할 수 있다.</u>
---	---